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: 2021년 1월 11일
- 회부일자: 2021년 1월 13일

3. 제안사유

-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-68호)에 따른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특구 지역을 개발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 신설 (안 제12조제1항)
-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 신설 (안 제12조제2항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주희)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 개정은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라 특구의 개발과 육성을 목적으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,
-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, 특구에서 연구소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12조제1항은 연구개발특구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·조성하여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특구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취득 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며,
- 안 제12조제2항은 특구에서 연구소기업*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임.

* 연구소기업, 첨단기술기업,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연구기관

- 이는 강소연구개발특구의 개발과 육성을 지원하고,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통한 지역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가 국가기술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감면 혜택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【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】

- 육성분야: 스마트IT 부품·시스템

중분류	세분류
스마트전자부품	이차전지, 반도체·디스플레이부품 기록매체·측정부품
스마트센서	전기전자 센서, 바이오센서
이동체통신시스템	알고리즘·V2X시스템, 사이버보안·측위기술 시스템, 네트워크 기반 상황인지판단 시스템

- 공간구성: 충북대(기술핵심기관, 1.41km²), 오창과학산단 일부(배후공간, 0.79km²)

구 분		면적(km ²)	주요기능	비고
R&D지구	충북대 본원	0.95	중점기술 연구개발, 인력양성	
R&D 특성화지구	충북대 오창캠퍼스	0.46	육성분야 연구, 인력양성, 실증, 기술사업화 및 창업 지원	
사업화지구	오창과학 산업단지	0.79	창업·연구소기업 입주공간, 공동장비 활용 지원	
총 계		2.20		

- 파급효과: **2024년까지 GRDP 1,412억원, 부가가치 897억원, 취업유발 2,522명**

▪ 특구 내 연구소기업 65개, 일자리창출 410명, 기술이전 97건 등

- 또한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1항 및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제1항, 제24조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법적으로 타당하며,

【지방세특례제한법】

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,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(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"지방세 감면"이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12. 27., 2014. 1. 1., 2014. 3. 24., 2020. 1. 15.>

1. 서민생활 지원,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,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2. 특정지역의 개발, 특정산업·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
【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】

제14조(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,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24조(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·자금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(이하 "외국투자기업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규정한 것은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르면, 조세감면 일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조례의 다른 감면 항목과 기한을 동일하게 정한 것임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라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법적, 내용적으로 타당하며, 절차상으로도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거친 바 문제가 없음.